

입찰공고(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인공호흡기 1SET 구입(설치)(재공고)
- 나. 규격 : 규격서 별첨
- 다. 사업예산 : 78,100,000원
-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분할납품 불가)
-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사.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입찰진행일정

-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07.16.(10:00) / 물류관리팀 방문제출
-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07.14.(10:00) ~ 2026.07.16.(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 규격서 제출기한 및 장소 : 2026.07.13.(10:00) ~ 2026.07.16.(10:00)
/ 물류관리팀 방문제출
 -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07.15.(18:00) / 『나라장터(G2B)』
 -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2026.07.16.(10:00) / 『나라장터(G2B)』
 - * 규격서 제출을 포함한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16.(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품(과업)설명회** :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제품 규격이나 설치 등에 대한 문의는 장비요청부서 및 의공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첨부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제조 납품 또는 제조사나 대리점, 국내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반드시 확보하여 우리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제출처 : 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단, 공고 제2026-142호와 관련하여 입찰참가등록서 및 등록서류(입찰보증보험증권 포함)를 제출한 업체는 ‘가. 입찰참가신청서’만 제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자. 규격입찰서<서식 제2호> 1부.

※ 제품 규격서(제품 상세내역서) 및 카탈로그를 포함하고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된 규격서에 적합(spec 및 구성품 수량 등)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에 요구부서 및 의공학과 적격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응찰업체는 평가관련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병원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가격입찰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칭함)』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입찰보증금 제출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납부 불가)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70호('15.8.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302조에 의거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기기요청부서 및 의공학과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로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이며,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각종 대가는 본원 「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또는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사. 문의처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051-240-7783~4) 의공학과(☎051-240-7533~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51-240-712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7. 10.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제1조(납품) :** ① 이 계약의 납품(검수)은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함)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납품은 붙임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제작)한 신제품(부가구성품 포함)이어야 한다.
-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병원”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기한에서 매1일 지연시마다 “업체”는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관계 증명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부대비용 포함)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낙상, 감전, 건물파손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발생시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업체”는 계약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⑥ 납품시 “업체”는 “병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 ⑦ 계약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업체”의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한다.
-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의 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학 과, 시설관리팀, 전산개발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2조(모델 및 규격의 변경) : 이 계약에 명시된 모델 및 규격은 “병원”이 제시하고 “업체”가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업체”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 제3조(사후관리) :** ① 계약물품의 부분 및 전체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업체”는 30일 이내(“병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에 신제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 ②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병원과 계약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업체”가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손실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병원”의 고장신고 후 10일까지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 차부터는 “병원”의 예상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 ④ “업체”는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하자로 인한 손해를 “병원”은 “업체”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 :** “업체”는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 ② 대가의 지급 :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업체”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동일옵션 장비와 구입시기를 고려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 “업체”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를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통지) :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물품을 인도시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병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여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기술지원 및 교육) : ① “업체”는 검수 완료 후 “병원”의 직원이 계약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작동·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병원”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업체”는 “병원”의 장비 요구부서와 의공학과에 Operation/Service Manual(**회로도 포함**)을 각각 1부씩 제공한다.

제9조(정보보안) : ① “업체”가 계약물의 운용과 관련하여 USB 또는 기타 이동식 저장매체를 직접 소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필히 사전 악성코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물품에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체”는 운영체제 및 관련 프로그램 재설치를 포함한 기타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업체”는 위 ①항을 위반하여 “병원”에게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 정부기관(국가정보원, KISA 등)과의 합동조사로 그 내용이 입증된 경우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를 “업체”는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병원”과 “업체”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 위 “제9조의 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 207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1조(제제조치) : 만약 “업체”가 위 각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하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